



본란의 기사는 본회의 EC 주재 변호사의
보고서와 무역협회의 「주간 통상정보」를 발
췌한 것이며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1. 우루과이라운드 진행 상황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미·EC의 농업보조금
관련으로 봉착상태에 있는데 미국·EC 대표는
4월22일 회의를 갖고 가능한 조기에 결론을 짓
기로 합의하고, 농업보조금 문제는 6월말을 시
한으로 정해놓고 있다. 미국은 6년간 EC의 계
속적인 농업보조금 허용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
다. 농업보조금 문제가 해결되면 번겔 사무총
장이 제안한 최종안(Draft Final Act)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최종안은 상품 및 서비스에 따
라 시장접근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않아 농업보
조금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여러차례 협상이 진
행될 것이다.

미국·EC는 시장접근에 대한 의견 차이가
심화 되고 있는데 미 대통령의 "Fast Track" 협
상권한은 '93년 3월로 종료됐고 GATT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국회에서 문제가 되며, 대통령의
"Fast Track" 권한이 종료되면, 의회의 감시가
강화될 것이다.

1. NAFTA 진행상황

'92년 2월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모
여 협상을 진행한 원산지규정안은 미국, 캐나
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모델로 하고 있다. F
TA인 경우처럼, 원산지가 NAFTA 지역인 경
우의 상품인 경우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수출될 경우에만 관세혜택을 부여하며 원산지
가 NAFTA 지역으로 간주되는 상품의 경쟁은
NAFTA의 원산지규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FTA 규정처럼, NAFTA 원산지 규정안은 상품
이 NAFTA지역에서 전적으로 획득되거나 생산
되지 않더라도 관세표 분류상 HTA (Harmo-
nized Tariff System) 내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원산지가 NAFTA 역내로 간주하는 사항을 검
토중이다. 관세표 분류상의 원산지 규정을 지
키지 못하더라도 부가가치의 기준을 지키게 될
경우 NAFTA 역내의 제품으로 간주될 것이다.

미국과 멕시코는 적용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는 추가적인 로컬-컨텐츠 규정을
추가로 제안해 놓고 (적용범위 미정)이 규정에
따라 수출자들이 해당품목을 사전에 입수할 수
있다. 미국은 원산지 규정에 전통적인 상당한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라는 내용
을 적용할 움직임이어서, 이 규정으로 원산지
결정에 미 세관(Customs Service)이 주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하기 때문에 지나친 가
변적 개념(Elastic Concept)으로 간주되고 있어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이러한 내용은 미·캐나
다 자유무역 협정(FTA)에는 배제 되어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NAFTA 역내의 컨텐츠(Conte
nt)를 관련 제품의 수출지나 유통 업체에 의해
역내에서 발생된 가공·조립비용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캐나다는 직접비용과 간접비
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은 직접비용만 포
함한다. 멕시코도 역내의 컨텐츠는 수출 상품
의 총 부가가치에서 생산에 사용되거나 소비된
역외(Non-Regional) 재료의 부가가치를 제외
한 부가가치에 따라 결정하는 안을 제안해 놓
고 있다. NAFTA안은 최소량 규정(DE Minims
Rule)을 제안해 놓고 완제품이 NAFTA의 부가

가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원산지가 NAFTA 역의 국가의 제품이라도 NAFTA 역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의 7% 이상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역내 제품으로 간주한다. 원산지 규정의 다른 요소로 충족시키고 완제품의 가공과 조립이 역내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모든 활동이 이 규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포장과 기타 작업은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NAFTA의 원산지 규정은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원산지 규정을 우회하기 위한 어떠한 과정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규정으로 NAFTA를 활용하여, 원산지 규정에 의존하는 업체에게도 우려되는 사항이며, 주관적인 표준에 따라 객관적인 규정을 강요하는 내용 때문이다.

주한 미상공회의소(Am Cham)는 2월에 최종 체결된 한-미 협정에 따른 통신시장의 개방에 만족을 표하고 있으나, 아직도 한국 정부의 정책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세관절차와 관련하여 지적소유권에 대한 단속 미약관 가정용품을 포함한 가전제품의 소비억제 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관행에 따라 제품에 대해 보복 조치가 따를 수도 있다.

2. 한국산 카라디오 반덤핑

한국산 Car Radio에 대한 잠정관세부과가 지난 2월에 발표되었다. EC집행위는 삼성과 해태전자에 미소(Minimal) 덤핑 마진을 판정하였으며 결국 이들 업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최고세율(Residual Duty)은 38.3%이며 기타 업체의 덤핑 마진율은 6.3%~33.9%이다.

3. 일본, 한국, 홍콩산 릴 오디오 테이프 반덤핑

주시하듯이 EC집행위는 일본, 한국, 홍콩산

릴 오디오 테이프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종결했다.

유럽의 제조업체들은 집행위가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릴 오디오 테이프에 대한 제소를 처리했다. 그러나, EC업체들에 의하면 언제든지 본 테이프에 대한 새로운 제소가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초에 반덤핑조사를 받은 한국 업체는 금성사와 선경 마그네틱사였다.

4. 사법심사(Judicial Review)

EC 단일법은 EC의 제1심 법원(European Court of First Instance) 설립을 규정해 놓고 있다. 제1심 법원 설립의 목적은 독점금지, 반덤핑, Staff케이스와 같은 전형적으로 복잡한 사실들을 포함하는 특정 형태의 케이스에 대한 제1차 재심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하급 법원을 설립함으로써 EC 사법재판소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시키는데 있었다.

제1심 법원이 1989. 10 설립되었을때 반덤핑 케이스는 제1심 법원의 사법권에서 제외되었다. EC집행위는 명백히 EC 사법재판소가 행한 것보다 케이스에 관한 사실을 신중히 조사하게 되는 새로운 제1심 법원에 외국의 제조업체들의 EC 반덤핑 조치에 대한 항소증가에 우려하였었다.

본사안이 다시 검토중에 있는데 EC 사법재판소는 반덤핑 케이스에 대한 사법권이 제1심 법원에 전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명백히 EC집행위는 현재 제1심 법원에 반덤핑 케이스에 관한 사법권을 이양할 의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EC집행위의 의향은 한국 수출업체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제1심 법원은 한국 수출업체들이 EC 반덤핑 조치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EC 사법 재판소는 이미 반덤핑 케이스에 있어서 EC집행위가 이용한 논란 많은 대부분의 계산방법을 받아 들였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은 EC반덤핑법에 관한 새롭고도 더욱 자유로운 해석을 채택할 여지는 그리 많지 않으며, 제1심법원이 EC집행위의 반덤핑 관행을 상당히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5. EC반덤핑 케이스의 새로운 의사결정 절차

반덤핑 사법권을 제1심법원에 이양하는 것을 수용하는 반면에 EC집행위는 반덤핑 케이스상의 의사결정 절차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C집행위에 따르면, 현행 반덤핑 절차는 오히려 완만한데 왜냐하면 확정판정을 내리는 각료이사회와 EC회원국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반덤핑 자문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EC집행위는 보다 광범위한 의사결정권을 희망하고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반덤핑 자문위원회 및 각료이사회와의 협의 과정의 폐지를 원하고 있음. 반덤핑 조치는 단지 EC집행위에 의해 취해지며 특별 위원회가 감독을 하게 될 것이다.

EC집행위가 반덤핑 자문위원회와 각료이사회를 통하여 EC회원국들의 견제와 정치적 통제가 없는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한국 수출업체는 좋지 못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 반덤핑 케이스에서 EC회원국들은 반덤핑 자문위원회에서 참여를 통해 EC집행위가 보호무역주의 조치와 방법론의 채택을 무마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EC회원국의 통제권 배제는 EC집행위에 상당한 저항권을 주게 될 것이며 한국 수출업체들이 EC회원국가에 로비활동을 통해 반덤핑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6. 한·EC 정부간 협상

주지하듯이, 한·EC간에 최근 벌인 가장 중요한 정부간 협상은 한국내 지적소유권(IPR)의

적절한 보호, EC에 의해 이루어진 한국의 지적소유권 보호제도와 GSP 수혜대상과의 연관성을 포함하고 있다.

본 문제는 1991.9.27 호의적으로 해결되었으며 한국은 1992.1월부터 EC에 의해 GSP 수혜를 다시 받게되었다.

현재, 한·EC간 기타 주요통상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은 없는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기할 점은 EC관리들이 한국을 개도국으로서 GSP 수혜를 계속 부여할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점이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EC 관리들은 한국을 개도국으로 계속 간주하는 문제를UR협상 결과에 좌우시킬것이다.

7. EC 통상 기관 및 협회의 규정/정책입장

이전의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듯이, EC집행위는 제3국의 지적소유권 보호문제를 조사중에 있으며 유럽의 지적소유권보호자들에게 제3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장벽의 내용(예, 내국민대우 위반, 산업디자인 보호 미흡 등)에 관한 질의서에 회신하여 줄것을 요청한 바 있다.

유럽업체로부터 접수한 답변서는 집행위가 금년 말 본사안과 관련하여 개최할 청문회의 기본자료를 작성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1992.1.1 이었으나, EC집행위관리들은 많은 업체들이 추가 답변서 제출시안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EC집행위는 지금도 답변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EC집행위관리들에 의하면 본청문회는 6월말 브뤼셀에서 열릴것으로 전망되며 집행위의 질의서에 답변서를 제출한 유럽의 무역협회들과 업체들의 대표들은 초청될 예정이다.

확신컨데, 특히 EC가 과거에 한국에 지적소유권 보호수훈의 미흡과 관련 우려하였던 점을 감안해 볼때 유럽의 업체들이 EC집행위의 질

의서에 답변한 국가들중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주시하듯이, EC는 최근 미국의 지적소유권 보유자들에게 보호하고 있는 동등한 방법으로 유럽의 지적소유권 보유자에 대한 소급보호를 거부한 한국과 관련하여 한국의 유럽업체에 대한 지적소유권의 보호수준에 빈번히 불만을 토로하였다.

지적소유권 소급보호문제가 해결되고 이 결과로 한국에 대한 GSP수혜가 부활되었으나, EC는 한국의 기타 지적소유권 관련 문제에 계속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한국업체들은 한국내 반도체 제품에 대한 보호제도의 미흡 때문에 반도체 보호의 관련하여 EC로부터 내국민 대우를 계속 받지 못하고 있다.

8. 세계 무역 협상

UR 협상은 미국·EC간에 농산물가격 지원 및 수출보조금 문제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기때문에 당분간 정체상태에 있다.

이러한 협상정체를 타결위한 최근의 시도는 4.22 와싱턴에서 열린 부시대통령과 텔러스 EC 집행위 원장간의 회담을 포함되는데 본회담에서 타결을 볼것이라는 예상은 그리 높지 않았으며 양당사자가 협상을 지속을 시킬 의향을 언급하였을지라도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이와 유사하게, 부시-텔러스회담 며칠 후 G-4(미국, 캐나다, 일본, EC) 각료회담에서도 당사국들이 UR협상을 지속시키기로 재언급하였을지라도 협상진전을 보도하지 않았다.

미국과 EC의 지도자들은 UR협상이 6월까지의 종결될수 있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독일 콜총리는 특히 본 UR타결시한을 고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는 7월초 독일에서 열리는 G-7정상회담은 UR보다는 독립국가연합(CIS)과 동유럽에 대한 원조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점에 몹시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UR협상이 6월까지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예를들면, 미국 대통령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부시대통령이 7월과 8월에 각각 열리는 양주요 정당의 대통령후보지명전 바로전에 협상타결에 필요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현재 UR협상이 금년말 또는 1993년 초 이전에 종결되지 않을 공산은 매우 높았다.

한국전자산업의 주요관심 협상분야는 GATT 반덤핑 코드 개정, 분쟁해결, 그리고 어느정도는 무역관련 지적소유권 보호문제에 있는것으로 보이나 이들 분야의 최종 협정은 농업관련 협상이 타결되어서야 비로서 거의 확실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농업분야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 1990.12 UR의 성공적인 종결위한 GATT 각료회담의 실패에 대한 비난을 받은 여러국가들중 1개국가였음.

특히, 한국은 일본과 함께 각료회담중 국내 쌀시장의 개방공약에 대한 거부는 농업분야 현상타결의 실질적인 장벽으로서 널리 인식되었음. 따라서 일단 미국과 EC가 UR 농업분야협상에서 특별쟁점을 해결하면 농업분야 협상은 다시 한국과 일본으 쌀시장개방문제로 초점이 모아질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임.

9. EC산업정책과 기타산업 뉴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의 전자 제조업체들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희망으로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가령, 금년초 BULL 및 IBM社は 첨단 반도체 칩 개발과 영국의 SGS-Thomson 및 GEC Plessy Semiconductors社は 반도체 칩을 공동 개발하여 제휴한점 이러한 추세를 입증해주는 것이다.

92.3월말 Philips社は 미국의 Motorola社와 협력하여 Compact Disk Interactive 용 반도체 칩의 디자인을 개발키로 하고 Grundig社와 비디오 및 무선전화기의 공동 사업키로 한 것은

(67페이지에서 계속)